

■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 - 13호

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3월 22일
금융위원회

1. 개정이유

「제재개혁 추진방안」(15.9.2)의 원활한 이행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에 반영하여 제재 제도의 합리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내규·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삭제(안 제15조, 제27조)

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·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

- 법규에 근거 없는 여신 관련 내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삭제
- 검사 후 조치요구사항의 하나인 경영유의·경영개선사항은 단순 행정지도 성격에 해당하므로 이행 부진시 제재 근거를 삭제

나. 임원제재의 실효성 제고(안 제18조, 제19조)

1) 임원의 복수 금융기관에 대한 연속적 위반행위 합산 제재

- 과거 재직했던 금융기관에서 동일·유사한 위반행위(이미 제재받은 행위 제외)를 저지른 경우 이를 고려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함

2)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 신설

- 임원 해임권고시 '직무정지'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

다. 기관제재의 합리성 제고(안 제20조의2, 제24조)

1) 기관제재에 대한 경합가중제도 도입

- 동일한 검사에서 적발된 위반행위가 4건 이상인 경우,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2) 확약서·양해각서 제도 활성화

- 법규 위반도 필요시 확약서·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

라. 금전제재 가중·감경기준 합리화(안 별표2 제5호, 별표3 제4호)

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중·감경제도를 개선

1) 감경사유 신설 및 한도 확대

- 내부통제시스템 시행 등 상당한 주의·감독을 한 경우 : 과태료 예정금액 또는 기본과징금의 50% 이내 감경으로 확대(기존 20%)
- 정부시책 준수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: 과태료 예정금액 또는 기본과징금의 30% 이내 감경 신설

2) 가중사유 신설 및 한도 확대

-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 직접 관여한 경우 : 과태료 예정금액 또는 기본과징금의 20% 이내 가중 신설
-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한 경우 : 과태료 예정금액 또는 기본과징금의 20% 이내 가중 신설
- 위반행위의 일수 증가에 따른 과징금 가중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(365일 초과시 0.4% 가중 신설)

- 최근 3년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기본과징금의 20% 이내 가중으로 확대(기존 10%)

마. 기타 제도개선 : 제재 가중·감면시 기타 감독기관 제재 감안(안 제26조)

금융위·금감원 외의 감독기관(신협중앙회, 농협중앙회 등)이 금융 관련법규에 따라 취한 제재 조치가 있는 경우, 이를 고려하여 가중·감면할 수 있도록 함

3. 세부 개정내용

□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'고시·공고·훈령'을 참조

○ 금융위원회(www.fsc.go.kr) → 지식마당 → 법령정보 → 고시·공고·훈령